##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

의 안 번 호 1413

제출연월일: 2017. 11. 1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O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·관리하기 위해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

### 2. 주요내용

O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17도 말	201	8년도 조성계	계획	2018년도 말	비고
조성액	수 입	지 출	증 감	조성액	
996,320	149,400	44,000	105,400	1,101,720	

### O 수입계획

- 이자수입: 14,000천원

- 수수료수입: 50,400천원

- 과태료수입: 85,000천원

### O 지출계획

-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・보수 : 20,000천원

-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: 24,000천원

### 3. 근거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
- O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4.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: 따로 붙임

###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414 제출연월일: 2017. 11. 1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 및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입장료·사용료 조항을 적용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를 개정·정비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법규(조례)의 시설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야영(캠핑) 시설과 동일하 게 적용
  -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 제36조에 준용하여 중구 야영시설의 시설 사용료를 결정한다.(별표 1)
- 나. 시설사용료의 반환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- 다. 캠핑장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을 전면 개정(안 제5조)

#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 제36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- 나. 및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: 2017. 10. 10. ~ 10. 31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712호

##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"를 "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 관리·운영에 관하여"를 "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"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야영데크"를 "야영데크, 카라반,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관리·운영하는"을 "관리 및 운영하는"으로, "관리·운영하는 자(법인·단체"를 "관리 및 운영하는 자(법인과 단체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시설사용료"를 "별표 1의 시설사용료"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시설사용료의 반환)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  - 1.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
  - 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-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5조(시설사용료 감면)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전액감면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
-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100분의 30 감면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- 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1급~3급 장애인
  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라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  - 마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 공자
  - 바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  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-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 된 특수임무유공자
  - 자.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- 3. 100분의 20 감면: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8조제1항 전단 중 "관리·운영"을 "관리 및 운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제9조 중 "대여 할"을 "대여할"로 한다.
- 제11조제1항 중 "변상하여야"를 "변상하여야 하며,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

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관리·운영"을 "관리 및 운영"으로, "에게"를 "에"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"관리 운영하여야"를 "관리 및 운영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원상 복구하여야하며,복구"를 "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관리 · 운영"을 "관리 및 운영"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,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및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 중 "관하여 필요"를 "필요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<별지> 【별지 제1호서식】

##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

사 용 자			생병	선 월	일			
사용목적								
사용자 주소					7	전화번	<u>ব</u> ু কু	
사용기간 및	2	20	년	월	일	시	분부터	}
시간	2	20	년	월	일	시	분까지	
사용시설								
감 면 액	원(/	시설	[사용.	료의	%)			
감면신청								
사 유								
구비서류	<ul> <li>○ 전액감면: 증명서,</li> <li>후 공익</li> <li>○ 100분의 30: 증명서</li> <li>주민</li> <li>○ 100분의 20: 신분증</li> <li>있는 증</li> </ul>	행 <i>/</i> 등록 ÷, 주	사로 추천서 등본 ←민등	인정된 l(기관 등 건	· 장 직 남액사·	] 인날 유를	인), 가 <del>?</del> 확인할	족관계 증명서, 신분증 수 있는 증명서

「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날인 또는 서명)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

### 【별표 1】

### 캠핑장 시설사용료(제3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 (정의 미	사 용	성수기 (7위e	비수	- 기	비 고
시설명	(정원 및 면적)	기 준	(7월~8 월)	주말· 공휴일	평 일	비 고
오토캠핑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30,000	25,000	20,000	전기사용 료 포함
야영데크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20,000	20,000	15,000	n
카라반	6인용	1개소/1일 (1박기준)	150,000	130,000	110,000	n

### ○ 1일 사용시간

- 당일 14:00 ~ 다음날 11:00 기준이며,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- 1시간 초과 2시간까지: 사용료의 20%, 2시간초과 4시간까지: 사용료의 40%,

4시간 초과 : 1일 사용료 추가

## 【별표 2】

###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3조의2 관련)

구 분	반환기준	비고
1)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		
-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	- 사용료 전액 반환	
- 사용예정일 2~4일 전에 취소	- 사용료의 90% 반환	
-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	- 사용료의 80% 반환	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- 사용료의 70% 반환	
2) 예약·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 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	- 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	

<sup>※</sup>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(11:00)까지 취소하는 경우 당일 취소로 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편 행	개 정 안
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	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
관리・운영 조례	<u>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	제1조(목적)
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	<u>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</u>
<u>관리·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	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"시설"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	3
오토캠핑장, <u>야영데크</u> 그 밖의	<u>야영데크, 카라반,</u>
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	
다.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"관리자"란 시설을 <u>관리·운</u>	5 관리 및 운
<u>영하는</u> 울산광역시 중구청장	영하는
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또는	
위탁받아 <u>관리·운영하는 자</u>	<u>관리 및 운영하는 자(법</u>
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를 말	인과 단체
한다.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설사용료) ① 캠핑장의 시	제3조(시설사용료) ①
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(이하	
"사용자"라 한다)은 <u>시설사용료</u>	별표 1의
를 납부하여야 한다.	<u>시설사용료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2(시설사용료의 반환) ① 관
	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
	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	1.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
	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
	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
	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	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
	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
	<u>여야 한다.</u>
제5조(시설사용료 면제) 다음 각 호	제5조(시설사용료 감면) ① 관리자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는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	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
를 면제할 수 있다.	<u> 감면할 수 있다.</u>
1.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	<u>1. 전액감면</u>
<u>원</u>	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
2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	<u>서 주관하는 행사</u>
하는 사람	나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

현 행	개 정 안
3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	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
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	<u>하는 경우</u>
	<u>2. 100분의 30 감면</u>
	<u>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</u>
	에 따른 수급자
	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
	<u>1급∼3급 장애인</u>
	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	원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제86
	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<u>해당하는 자</u>
	라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
	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
	<u> </u>
	마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
	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
	록된 참전유공자
	<u>바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</u>
	<u>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</u>
	<u>민주유공자</u>
	사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
	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	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	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	아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

현 행	개 정 안
	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
	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	자.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
	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	3. 100분의 20 감면: 주민등록상
	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
	<u>주하는 사람</u>
제8조(시설의 사용제한) ① 관리자	제8조(시설의 사용제한) ①
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<u>관리·운</u>	관리 및 운
<u>영</u>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	영
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	
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	
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	
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	
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	
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	②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	
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	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	1.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
해한다고 판단될 경우	있어 시설사용시 현저한 위험
	이 예상될 경우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	제9조(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
대여 금지) 캠핑장 시설에 대한	대여 금지)
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	
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	<u>대여할</u>
게 양도하거나 다시 <u>대여 할</u> 수	
없다.	
제11조(변상책임) ① 사용자가 고의	제11조(변상책임) ①
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	<u>변상</u>
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<u>변상하여</u>	하여야 하며, 손해배상액은 원상
<u>야</u> 한다.	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캠핑	제12조(위탁관리) ①
장의 효율적인 <u>관리·운영</u> 을 위	관리 및 운영
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	
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	
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<u>에게</u> 위탁	<u>에</u>
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수탁자의 의무)①・② (생	제13조(수탁자의 의무)①·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	3
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.	관리 및 운영하여야 -

### 혅 햀 개 정 안 ④·⑤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생 략) ⑥ 수탁자가 고의, 과실 또는 선 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 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 ------ 원상복구 여야하며,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-----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제14조(지도감독) ① 수탁자는 캠핑 제14조(지도감독) ① ------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 회 이상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·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리 및 운영-----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제16조(준용) 시설사용료 징수 및 | 제16조(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캠핑장의 관리 · 운영 등에 관하 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 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캠핑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하 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및 「울산광역시 중 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116조(적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은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울산광역 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 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 른다.

현	행			개	정	안	
제17조(시행규칙)	이 조례	의 시행에	제17조(	시행규	칙)		
관하여 필요한	사항은	규칙으로	필요				
정한다.							

	,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[별지 제1호서식]
	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
	사용자 생년월일
	사용목적
	사용자 주소 전화번호
	사용기간 및 20 년 월 일 시 분부터
	시간 20 년 월 일 시 분까지
	사용시설
	감 면 액 원(시설사용료의 %)
	감면신청
	사 유 ○ ○ 전액감면: 증명서, 행사 주관(주최)부서에서 캠핑장
	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
	○ 100분의 30: 증명서, 추천서(기관장 직인날인),
	구 <sup>비서류</sup> 가족관계 증명서, 신분증, 주민등 록등본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
	있는 증명서
	○ 100분의 20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
	「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 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.

일

년 월

							신청인 (날인						또는 †명)
							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						
		1		<u></u>				<b>⊸</b> ì	) 7		ما		
	<u>ਵੇ</u>	<u>l</u>		행				<i>/</i>	· 경	3	안		
[별표	1]						[별표	. 1]					
캠 3	핑장 시	설사용	-료(ス	•			캠	핑장 시	설사용	- 료(フ	Ť		
				ı	단위 : 	원)						(단위 :	: 원 <del>-</del>
시설명	구 분 (정원 및 면적)	사용기준	성수기 (7월~8월)	비 * 주말· 공휴일	수 기 평일	н]	시설명	구 분 (정원 및 면적)	사용기준	성수기 (7월~8월)	비 · 주말· 공휴일	수 기 평일	ы]
오토캠핑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20,000	20,000	15,000	전기시 료 포	오토캠핑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30,000	25,000	20,000	전 <i>7</i> 료
<u>야영데크</u>	<u>4~5인용</u> ( <u>3×4m,</u> 12㎡)	1개소/1일 (1박기준)	15,000	15,000	10,000	"	<u>야영테크</u>	1개소	1개소/1일 (1박기준)	20,000	20,000	15,000	
		<u>&lt;신</u>	<u></u>				<u>카라반</u>	<u>6인용</u>	<u>1개소/1일</u> ( <u>1박기준)</u>	150,000	130,000	110,000	
<u>텐트임</u> <u>대</u>	<u>4~5인용</u>	<u>1711</u>		10,000		<u>데크시</u> 료 별			<u>&lt;</u> ^	<u> 제&gt;</u>			
<u>야외공 48㎡ 4시간/1회</u> 연장 (6×8m) 당 50,000							<삭 제>						
-	<b>사용시간</b> 당일 14:00 추가요금 2 1시간 초과 5,000원,	일수	3,000	<u>원, 2시긴</u>	<u>.</u> 초과 4		-	<b>사용시간</b> 당일 14:00 추가요금 3 1시간 초과 까지 : 사용	일수	: 사용료:	의 20%,	2시간초	과 4
<u> </u>	<b>  기봉투 지</b> 일반용봉투( 음식물전용	(20ℓ) 1징	<u> </u>				<u>〈삭 7</u>	<u> 1</u> )					

100 (제203회-본회의제3차부록)									
	[별표 2]        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3조         관련)				[별표 2]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<u>(제3조의2</u> <u>관련)</u>				
	구	분	반환기준	비고	구	분	반환기준	비고	
		<생 략>				<현행과 같음>			
				·					

## 근거 법규

### 1. 「관광진흥법」

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6.5.>
-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·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.

### 2. 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

제36조(입장료·사용료 <개정 2011·10·13>)법 제40조에 따라 도시공원(이하 "공원"이라 한다)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·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별표 2에서 범위로 정하는 입장료·사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·1·8, 2011·10·13, 2016·12·29, 2017·6·1〉[전문개정 2008·1·10]